

의료비 신속지급제도 신청 및 약약서

의료비 신속지급제도

실손의료보험(실손의료비) 가입자 중 입원 치료 후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선납입하기 곤란한 일정 대상자에 한해 중간정산액 중 일부(예상 지급보험금의 70%)를 선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.

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하시는 사항에 동의란에 V하여 주십시오.

본인은 입원 중간 진료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료비 신속지급을 신청합니다.

동의

신청자격	<input type="checkbox"/> ①의료급여자(1종 또는 2종) <input type="checkbox"/> ②중증질환자 <input type="checkbox"/> ③본인부담금 300만원 이상 발생 - ② 또는 ③ 의 경우 의료법 제 3조 2항 제 3호에 의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경우로 제한됩니다. - 손해조사 또는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중간정산 치료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
치료 병원 명	의료기관 명칭 _____

본인은 선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향후 최종 보험금 심사결과 산정보험금이 선지급한 보험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()을,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판명된 경우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DB손해보험(주)에 환급할 것을 약속합니다.

동의

본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이 귀사로부터 지급받을 여타의 보험금·제지급금에서 귀사가 반환받을 보험금과 상계함을 동의합니다.

동의

년 월 일

피보험자와의 관계 : _____

성 명 : _____ (인)

